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및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추가모집 통합공고(일부변경)**

< 주요 변경내용 >

구분	당초	변경
신청자격	기존 마케팅지원사업(온라인기획전 제외)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레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기존 마케팅지원사업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레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단, '24년 온라인기획전(상생기획전)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에 한하여 신청자격 변경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레츠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분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통합공고 하오니, 소상공인·중소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렛츠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등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다음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 개별안내 예정)

- ② 기존 마케팅지원사업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 단, '24년 온라인기획전(상생기획전)으로 기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 ③ 신규 신청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

-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각 플랫폼 매출사실을 입증(증빙자료 참조)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

구분	내용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3]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제외품목	• 해외 직수입 상품 제한* • 국내 제조 상품 이외 상품의 경우 OEM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동 공고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대형협동조합 상품” 지원

□ 제출서류 : 판판대로 기존 선정업체는 별도 제출 불필요,
신규 신청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

- 각 플랫폼 매출사실 입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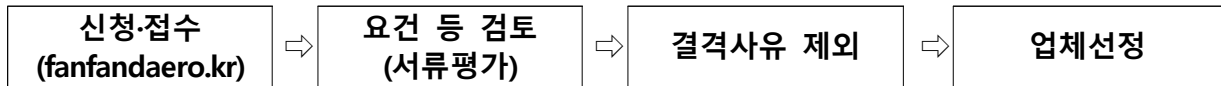
- * (위메프·티몬) 판매자 페이지의 5~8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 (인터파크·AK몰) 판매자 페이지의 7~9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 (알렛츠) 판매자 페이지의 7~8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3.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4.8.28 ~ 수시

* 예산 소진시 공고 마감

□ 선정절차



□ 신청방법

· 판판대로 기지원(참여) 업체

☞ ① 판판대로 로그인 → ② 사업신청 → ③ 상품선택 → ④ 신청완료

· 판판대로 미지원(미참여) 업체

☞ ① 판판대로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사업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추가 제출서류 등록 → ⑦ 신청완료

4. 문의처

구 분		전 화	이메일
소상공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커머스팀	02-6678-9452	paamlish@kodma.or.kr
		02-6678-9453	lya2790@kodma.or.kr
		02-6678-9459	smk2022@kodma.or.kr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판로지원팀	02-6678-9813	kte0110@kodma.or.kr
		02-6678-9814	sunok2011@kodma.or.kr

※ 사업의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판판대로에 공지

붙임 1

플랫폼별 지원 내용 (가나다 순)

< 소상공인 : 9개 플랫폼 중 선택, 중소기업 : 2개* 플랫폼 중 선택 >

*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 11번가, G마켓/옥션

구분	플랫폼	정산주기	지원내용
1	그립	월 4회 정산 (7, 12, 20, 27일)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광고구좌 지원 등
2	네이버쇼핑	구매확정 후 1일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비즈쿠폰(광고비) 지급 등
3	도매꾹	배송완료 후 최소 2일 ~ 최대 30일	국내제조 상품 직매입 지원
4	롯데온	구매확정 후 1일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셀러머니(광고비) 지급 등
5	우체국 쇼핑몰	월 3회 (10일 단위)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기획전 홍보지원 (앱푸시 등)
6	쿠팡 (로켓배송)	60일 이내	소상공인 전용관 상품노출 및 할인쿠폰 지원
7	11번가	구매확정 후 2일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셀러포인트(광고비) 지급 등
8	G마켓·옥션	구매확정 후 1일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e머니(광고비) 지급 등
9	H몰	월 3회 (10일 단위)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 광고구좌 지원

* 쿠팡·H몰의 경우 직매입·종합몰 상품검수 절차가 있어, 미통과 사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플랫폼에 따라 일부 지원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임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 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용자제외 업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

□ 용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